

집합투자기구 변경대비표

- 대 상 편 드 :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[주식]
- 대 상 서 류 : 집합투자규약
- 주요 변경내용 : 해지 모투자신탁 삭제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변 경 시 행 : 2020년 11월 13일 (금)

- 집합투자규약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~③(생략)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~3. (생략) 4. 현대밸류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⑤(생략)	①~③(현행과 동일)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현행과 동일) 4.<삭제> ⑤(현행과 동일)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(생략) ④ <신설>	①~③(현행과 동일) ④ <u>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, 변경절차, 손실보상 및 손해 배상 등에 대한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</u> 1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관련 법령·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 2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